제139회(임시회)

#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회회의록

제1호(부록)

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

목 차

1. 서울특별시종로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(종로구청장 제출) ..... 1면
○서울특별시종로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..... 6면

## 서울특별시종로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

| 의안 번호 | 996 |
|---|---|

제출년월일 : 2004. 3. .
제 출 자 : 종로구청장

### 1. 개정이유

가. 중소기업을 위한 실질적인 보증지원 체제를 마련하여 보증 수혜기업 확대 및 우리구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효과를 높이고,

나. 담보력이 부족한 영세업체를 위한 특별신용보증제도를 신설하여 기업경영에 도움을 주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정비·보완하려는 것임.

### 2. 주요골자

가. 기금의 용도를 다음과 같이 세분화 함(안 제4조 제1항)

1) 중소기업자에 대한 시설자금, 운전자금 및 기술개발자금 융자

2) 기금의 운용·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

3) 중소기업육성지원을 위한 사업비 출연(서울신용보증재단 등)

4) 기타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

나. 기금의 중소기업지원목적 외 사용금지 조항 신설(안 제4조 제2항)

다. 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내용 중 " 특별신용보증 추천대상자 선정" 내용 추가 (안 제6조 제1항 제3호)

라. 기금운용위원회 위원 일부 변경(안 제6조 제2항)

위원 중 "지역경제과장, 기획예산과장, 사회복지과장, 재무과장, 환경위생과장, 구금고 소관지점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하는 중소기업의 대표가" 를 "지역경제과장, 기획예산과장, 재무과장, 환경위생과장,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인, 구금고 소관지점장 및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하는 중소기업의 대표 2인이 " 로 일부 변경

**마.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수당지급 조항 신설**

1)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**(안 제6조 제5항)**

2) 위원회에 출석하는 구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**(안 제6조 제6항)**

**바. 기금의 융자대상 및 융자절차 내용 일부변경(안 제7조 제1항 제3호)**

"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자" 를 " 소기업및 소상공인을위한특별조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" 으로 변경

**3. 관계법령**

- 지방자치법 제133조
-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43조

**4. 예산수반사항**

- 2004년도 예산에 기반영

**5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따로붙임**

서울특별시종로구조례 제 호

# 서울특별시종로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종로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4조(기금의용도)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.

1. 중소기업자에 대한 시설자금, 운전자금 및 기술개발자금 융자
2. 기금의 운용·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
3. 중소기업육성지원을 위한 사업비 출연(서울신용보증재단 등)
4. 기타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

②기금은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.

제6조제1항제3호를 동항제4호로 하고,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특별신용보증 추천대상자 선정

제6조제2항중 "지역경제과장, 기획예산과장, 사회복지과장, 재무과장, 환경위생과장, 구금고 소관지정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하는 중소기업의 대표가"를 "지역경제과장, 기획예산과장, 재무과장, 환경위생과장,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인, 구금고 소관지정장 및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하는 중소기업의 대표 2인이"로 하고, 동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
⑥위원회에 출석하는 구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7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3.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·구조문 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|---|
| 제4조(기금의용도) 기금은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중소기업의 시설자금, 운전자금 및 기술개발자금으로 융자하거나 기금의 운용·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에 사용한다. | 제4조(기금의용도)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.<br>1.중소기업자에 대한 시설자금, 운전자금 및 기술개발자금 융자<br>2.기금의 운용·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<br>3.중소기업육성지원을 위한 사업비출연 (서울신용보증재단 등)<br>4.기타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 |
| 〈신 설〉 | ②기금은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. |
| 제6조(기금운용위원회) ① (생 략) | 제6조(기금운용위원회) ①(현행과 같음) |
| 1.(생 략) | 1.(현행과 같음) |
| 2.(생 략) | 2.(현행과 같음) |
| 〈신 설〉 | 3.특별신용보증 추천대상자 선정 |
| 3.(생 략) | 4.(현행과 같음) |
|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생활복지국장, 위원은 지역경제과장, 기획예산과장, 사회복지과장, 재무과장, 환경위생과장, 구금고 소관지점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하는 중소기업의 대표가 된다. | ② 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<br>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<br>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<br>지역경제과장, 기획예산과장, 재무과장, 환경위생과장, 구금고 소관지점장, 구 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인, 및 구청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하는 중소기업의 대표 2인이 —. |
| ③(생 략) | ③(현행과 같음) |
| ④(생 략) | ④(현행과 같음) |
| 〈신 설〉 | ⑤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|
| 〈신 설〉 | ⑥위원회에 출석하는 구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 |

| 현 행 | 개 정 안 |
| --- | --- |
| 제7조(기금의 융자대상 및 융자절차)<br>①(생 략)<br>1.(생 략)<br>2.(생 략)<br>3.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자.<br>4.(생 략)<br>②(생 략) | 제7조(기금의 융자대상 및 융자절차)<br>①(현행과 같음)<br>1.(현행과 같음)<br>2.(현행과 같음)<br>3.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<br>4.(현행과 같음)<br>②(현행과 같음) |